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24호서식] <개정 2020. 12. 10.>

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[] 통보서 []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일
신고인	성 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
	주 소	전화번호
영업소와 소재지(명칭)		
상 호		전화번호
영업의 종류		등록(허가)번호
휴업 또는 폐업 사유		
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		
휴업 또는 폐업 범위		
휴업기간		

「관광진흥법」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통보(신고)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·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

참고사항

관광사업(카지노업 제외)의 폐업신고 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제출된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.

첨부서류	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(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수 리
신고인		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 ·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 · 지역별 관광협회)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